

##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
<p><b>제9조 (소집 및 심의)</b>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운영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<u>따른다.</u></p>	<p><b>제9조 (소집 및 심의)</b>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운영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<u>따른다. 다만, 제8조 제3호의 ‘협력업체 해지·제재처분’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
<p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이 절차 개정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.</p>	